

목차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4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1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주식) 1 호 17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2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9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1 호 35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3 호 40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4 호 44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 호 49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스트레티지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54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60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 70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74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 80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85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F)(채권)..... 90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I)(채권)..... 96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01

| | |
|--|-----|
| 프랭클린템플턴 내추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106 |
| 프랭클린템플턴 뉴셀렉션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112 |
| 프랭클린템플턴 단기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118 |
|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124 |
|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128 |
| 프랭클린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141 |
| 프랭클린템플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 153 |
| 프랭클린템플턴 아시아안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 160 |
| 프랭클린템플턴 아시아안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167 |
| 프랭클린템플턴 오피튜니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173 |
|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글로벌 스트레티지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179 |
|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184 |
|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189 |
|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194 |
|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200 |
|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 209 |
| 프랭클린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14 |
| 프랭클린템플턴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220 |
| 프랭클린템플턴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 227 |
| 프랭클린템플턴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 237 |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242 |

| | |
|---|-----|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248 |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 256 |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 261 |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 266 |
| 프랭클린템플턴 재형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272 |
| 프랭클린템플턴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 275 |
|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79 |
|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재간접형) | 289 |
|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94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307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2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313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3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319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4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324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UH)(채권) | 330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335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340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채권 5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346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아시안 그로스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351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356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361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파워리서치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367 |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371
 프랭클린템플턴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378
 프랭클린템플턴 프런티어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384
 프랭클린템플턴 프런티어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주식)390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CLASS C-F 수익증권: | CLASS C-F 수익증권: | CLASS C-F 수익 |

| | | | |
|----------------------------|--|--|---------------------------------|
| |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p>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p> | <p><u>(추가)</u></p>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p>제2부. 11. 가. (2)가입자격</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 <p>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 | | |
|--------------------|---|--|------------------|
| | <p>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 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 |
|----------------------------------|------------------|-------------------------------|-------|
| | | 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p> |

| | | | |
|-----------------------------------|---|--|-------------------|
| 함), 일반법인 14% | | | 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p> |
|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 <p>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p>제2부. 9. 나. 위험관리</p> | <p><u>환해지</u> 내용 추가</p> | <p><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p>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p> | <p><u>(추가)</u></p>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 | | |
|--------------------------------------|--|---|---|
| <p>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 격</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p>제2부. 11. 가. 매입</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 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 | ※ 환매연기사유 | ※ 환매연기사유 | 법 개정사항 반영 |

| | | | |
|---|---|--|---|
| <p>매연기</p> | <p>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 | | |
|--|--|--|--------------------|
| | | <p><u>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한빌딩) 4</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p>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u>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5)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주식) 1 호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 집합투자업자의 |

| | CCMM 빌딩 3 층 |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도로명 주소 반영 |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갱신① |
| 제2부. 10. 나. 기타 투자위험 | (추가)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추가)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p> | |
|--|--|--|--|

| | | | |
|--------------------------------------|--|---|---|
| | |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실에 대한 상계기간 연장)</p> |

| | | | |
|--|--|---|--------------------|
| | | <u>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p>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p>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p>법령 개정 반영</p> |
| <p>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p>법령 개정 반영</p> |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 공시기준 개정 반 |

| | | | |
|-----------------------|--|---|-------------------------|
| | |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년 5월 3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다. 모자형 구조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u> | 연 갱신① |

| | | | |
|--------------------------|--|---|--------------------------|
| | | 하시기 바랍니다. | |
| 제2부. 10. 나.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격 | <p>나. 종류형 구조</p>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 |
|--|--|--|--|

| | | | |
|--------------------------------------|--|---|---|
| | | “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u>(추가)</u>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

| | | | |
|--|---|---|--------------------|
| | | <p><u>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기간 연장)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p>한국<u>채권</u>평가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층 (대표전화 02-399-3350)</p> | <p>한국<u>자산</u>평가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u>층 (대표전화 02-399-3350)</p>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 |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5) (삭제) 6) (삭제) | | |
| | 다. 모자형 구조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 제2부. 10. 나.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 격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p> | |
|--|--|--|--|

| | | | |
|--------------------------------------|--|---|----------------------------|
| | | <p>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u>(추가)</u>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 |

| | | | |
|--|--------------------------------------|--|-----------------------------------|
| | | <p><u>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p>한국<u>채권</u>평가</p> | <p>한국<u>자산</u>평가</p> | <p>채권평가회사 변</p> |

| | | | |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한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경 반영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1 호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로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10. 나.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p> | |
|--|--|--|--|

| | | | |
|--------------------------------------|--|--|--|
| | |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 |

| | | | |
|--|---|--|---------------------------|
| | | <p><u>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p>한국<u>채권</u>평가</p> | <p>한국<u>자산</u>평가</p> | <p>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p> |
| | <p>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층 (대표전화 02-399-3350)</p> | <p>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u>층 (대표전화 02-399-3350)</p> | |

| | | |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3 호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10. 나.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p> | |
|--|--|--|--|

| | | | |
|--------------------------------------|--|--|-----------|
| | |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u> | |

| | | | |
|--|---|---|---------------------------|
| | | <p><u>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p>한국<u>채권</u>평가</p> | <p>한국<u>자산</u>평가</p> | <p>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p> |
| | <p>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p> | <p>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p> | |
| | <p>www.koreabp.com</p> | <p>www.koreaap.com</p> | |

| | | | |
|---|---|---|-----------------|
| <p>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p> | <p>(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p>법령 개정 반영</p> |
| <p>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p>법령 개정 반영</p> |
| <p>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p>법령 개정 반영</p>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4 호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 | | |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번지 CCMM 빌딩</u> 3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10. 나.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p> | |
|--|--|---|--|

| | | | |
|--------------------------------------|--|---|-----------|
| | | 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u></p> | |

| | | | |
|--|---|--|--------------------|
| | | <u>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 |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 호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 | | |
|------------------------------|-------------------------|--|---------------------------|
| <p>투자결정시 유의사항</p> | <p><u>(추가)</u></p> | <p>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p> |
| <p>제2부. 10. 나. 기타 투자위험</p> | <p><u>(추가)</u></p>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u>(추가)</u></p>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u></p> | |

| | | | |
|--|--|--|--------------------|
| | |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올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p>• <u>(추가)</u></p> | <p>•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p> <p>1)~3) (생략)</p> <p>4) (추가)</p> <p>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p> <p>1)~3) (생략)</p> <p><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p> <p><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스트레티지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u>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u>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 |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년 5월 3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다. 모자형 구조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u>하시기 바랍니다.</u> | 영 |
|--|---|---|--|
| <p>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격</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 | | |
|----------------------------|--|---|----------------------------|
| <p>제2부. 11. 가. (3) (라)</p> | <p>1. <u>프랭클린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및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u>: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2. <u>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및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u>: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 <p>1. <u>프랭클린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및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u>: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2. <u>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u>: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 <p>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p> | |
|--|--|---|--|

| | | | |
|--|--|--|--------------------|
| | | 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생략) • <u>(추가)</u> |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u>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u> (펀드코드:58207) | <u>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u> (펀드코드: 58207) <u>Class A: AH339</u> <u>Class A-e: AH346</u> <u>Class C-I: AH347</u> <u>Class C-F: AH348</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및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1부. 2. 마. 특수형태 및 문서전반 | <u>(추가)</u>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년 5월 3일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및 집합투자규약, 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효력발생일부더 기존 가입자는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A 수익증권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모자형 [다른 자투자신탁과의 비교]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종류형 , 모자형 (삭제)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 <u>(추가)</u> | 나. 종류형 구조 정정후 1) 참조 | |

| | | | |
|---------------------|--|---|---------------|
| | 다. 모자형 구조 | <u>*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 | <u>(2) 가입자격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 <u>(2) 종류별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u> <u>*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1. 가. 매입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p> | |
|--|--|--|--|

| | | | |
|-----------------------------------|--|---|----------------------|
| | | <p>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p> | <p><u>없음</u></p> | <p><u>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u></p> <p><u>[CLASS A 수익증권]</u> <u>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u></p> <p><u>[CLASS A-e 수익증권]</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u> <u>2. 30 일 이상 : 없음</u> <p><u>[CLASS A,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u> <u>2. 90 일 이상 : 없음</u> <p><u>※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u></p> | <p>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p>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 생략 ③ <u>①또는②에</u>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p>※ 환매연기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 생략 ③ <u>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u>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 |
|----------------------------------|---|---|-----------------------|
| | |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 제2부. 12.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u>(추가)</u> | <u>집합투자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집합투자증권 종류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3. 1)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u>가입자 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3. 2)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u>정정 전 2) 참조</u> | <u>정정 후 2) 참조</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및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 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 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p> | <p>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 <u>4 천 만 원</u></p> | <p>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 <u>2 천 만 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p> |

| | | | |
|-----------------------------------|--|--|-------------------|
| 함), 일반법인 14% | | | 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및 | (생략)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정정 후 1)

나. 종류형 구조

| 집합투자기구 종류 | 최초설정일 | 가입자격 |
|--------------|------------|--|
| A | 2006.07.04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 A-e | 미설정 | 온라인을 통해,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 C-I | 미설정 |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 C-F | 미설정 |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

| | | |
|--|--|------------------------|
| | |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
| | |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주 1)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전 2)

| 구 분 |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 지급시기 |
|---------|----------------|------|
| 선취판매수수료 | 1.00% 이내 | 매입시 |
| 환매수수료 | 없음 | 환매시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2)

| 종류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A |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납입금액의 1.0% 이내 | 없음 |
| A-e |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납입금액의 0.6% 이내 |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
| C-I |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없음 |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
| C-F |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 |
| 부과기준 | 매입시 | 매입시 | 환매시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됩니다.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에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 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p> | |
|--|--|--|--|

| | | | |
|--------------------------------------|--|---|-----------|
| | |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u></p> | |

| | | | |
|--|--|--|--------------------|
| | | <u>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p>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p>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p>법령 개정 반영</p> |
| <p>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p>법령 개정 반영</p>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p>문서전반</p> |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p> |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p> | <p>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p>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p> | |
|--|--|---|--|

| | | | |
|--------------------------------------|---|---|---|
| | | 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u></p>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기간 연장) |

| | | | |
|--|-------------------------------|--|--------------------|
| | | <p><u>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 |

| | | | |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한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경 반영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에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헤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 |
|--|--|---|--|

| | | | |
|--------------------------------------|--|--|-----------|
| | |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u>(추가)</u>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u> | |

| | | | |
|--|---------------------------------------|--|---------------------------|
| | | <p><u>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p>한국<u>채권</u>평가</p> | <p>한국<u>자산</u>평가</p> | <p>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p> |
| | <p>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p> | <p>서울시 종로구 <u>올곡로 88(운니동, 삼환</u></p> | |

| | | | |
|--------------------------------------|---|---|----------|
| | 층 (대표전화 02-399-3350) www.koreabp.com | 빌딩 4층 (대표전화 02-399-3350)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이내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헤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 | | |
|----------------------|---|---|-------------------------|
| | |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가. (2) 가입자격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11. 가. | <u>(추가)</u>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p>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 | | |
|--|---|---|---------------------------|
| | | <p><u>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p>한국<u>채권</u>평가</p> | <p>한국<u>자산</u>평가</p> | <p>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p> |
| | <p>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p> | <p>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p> | |
| | <p>www.koreabp.com</p> | <p>www.koreaap.com</p> | |

| | | | |
|---|---|---|-----------------|
| <p>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p> | <p>(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p>법령 개정 반영</p> |
| <p>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p>법령 개정 반영</p> |
| <p>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p>법령 개정 반영</p>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F)(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 | | |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에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헤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 |
|--|--|---|--|

| | | | |
|--------------------------------------|--|--|-----------|
| | |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u>(추가)</u>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u> | |

| | | | |
|--|--------------------------------|--|--------------------|
| | | <p><u>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 | 서울시 종로구 <u>올곡로 88(운니동, 삼환</u> | |

| | | | |
|--------------------------------------|---|---|----------|
| | 층 (대표전화 02-399-3350) www.koreabp.com | 빌딩 4층 (대표전화 02-399-3350)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이내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I)(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에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헤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 |
|--|--|---|--|

| | | | |
|--------------------------------------|--|--|-----------|
| | |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u>(추가)</u>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u> | |

| | | | |
|--|--------------------------------------|--|---------------------------|
| | | <p><u>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p> |

| | | 증가 반영 | |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헤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 | | |
|--------------------|--------------------|--|------------------|
| | | <p>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추가)</p>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p>제4부. 1. 가. 회사개요</p>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p>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 | | |
|----------------------------|---|--|--------------|
| 요약 재무내용 | | |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 락) | |
|---------------|--|----|--|

프랭클린템플턴 내추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환헤지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추가)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격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p>제2부. 11. 가. 매입</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고 인정하는 사유 |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 | | |
|--|---|--|--------------------|
| | | 니다.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p>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p> | <p>법령 개정 반영</p> |
| <p>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 <p>(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p> | <p>법령 개정 반영</p> |

프랭클린템플턴 뉴셀렉션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p>문서전반</p> |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p> |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p> | <p>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p> |
| <p>문서전반</p> | <p>예탁결제원</p> | <p>한국예탁결제원</p> | |
| <p>투자결정시 유의사항</p> | <p>(추가)</p> | <p>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 | | |
|------------------------------|--|--|---|
| <p>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p> | <p><u>(추가)</u></p> | <p>2013년 5월 3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p>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p> |
|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 <p>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p>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p> | <p><u>(추가)</u></p>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 | | |
|--------------------------|--|---|-------------------------|
| | |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격 | <p>CLASS C-F 수익증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 | <p>CLASS C-F 수익증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11. 가. 매입 | <u>(추가)</u>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p>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추가)</p>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u></p> | |

| | | | |
|--|--|--|--------------------|
| | |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올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p>• <u>(추가)</u></p> | <p>•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p> <p>1)~3) (생략)</p> <p>4) (추가)</p> <p>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p> <p>1)~3) (생략)</p> <p><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p> <p><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단기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 |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년 5월 3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p>나. 종류형 구조</p>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나. 종류형 구조</p>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p>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 |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격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p>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11. 가. 매입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p> | |
|--|--|--|--|

| | | | |
|--------------------------------------|--|--|-----------|
| | | 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u></p> | |

| | | | |
|--|--|--|--------------------|
| | | <u>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생략) • <u>(추가)</u> |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p>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 격</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p>제 2 부. 11. 가. (3) (라) 모투자 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 는 판매가격</p> | <p><u>(추가)</u></p> | <p><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p> | <p>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p> | |
|--|--|--|--|

투자설명서 정정표

| | | | |
|--|-------------------------------|---|--------------------|
| | |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 집합투자업자의 |

| | | | |
|-----------------------|--|---|-------------------------|
| | CCMM 빌딩 3 층 |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년 5월 3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p>나. 종류형 구조</p>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p>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5) (삭제) 6) (삭제) | | |
| | 다. 모자형 구조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 격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p>제2부. 11. 가. (3)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p> | <p><u>(추가)</u></p> | <p><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p> | <p>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u>(추가)</u></p>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u></p> | |

| | | | |
|--|--|--|--------------------|
| | | <p><u>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 | |

| | | |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p>(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생략)</p> <p>-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p> <p>(생략)</p> <p>• (추가)</p> | <p>(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p> <p>-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p> <p>(생략)</p> <p>•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p>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생략)</p> <p>1)~3) (생략)</p> <p>4) (추가)</p> <p>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p> <p>1)~3) (생략)</p> <p>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p> <p>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p>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

| | | | 변경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정정 전 1) 참조 | 정정 후 1) 참조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제2부. 6. 나. 종류형 구조 | 정정 전 2) 참조 | 정정 후 2) 참조 |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p> | |
|--|--|--|--|

| | | | |
|--------------------------------------|--|---|--|
| | | 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u>(추가)</u>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실에 대한 상계기간 연장) |

| | | | |
|--|--|--|--------------------|
| | | <u>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1. 가. (2)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예탁결제원</u> 에 위탁하여야 하며, <u>예탁결제원</u>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한국예탁결제원</u> 에 위탁하여야 하며, <u>한국예탁결제원</u>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 | |

| | | | |
|--------------------------------------|---|---|----------|
| | 면을 보내야 합니다. | 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p>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p>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p> | <p><u>(추가)</u></p>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 영</p> |
| <p>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 격</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 | | |
|----------------|----------------|---|-----------|
| | 6) <u>(삭제)</u> | | |
| 제2부. 11. 가. 매입 | <u>(추가)</u>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p>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u> |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 <p>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u>(추가)</u></p> <p><u>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p>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실에 대한 상계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p>제4부. 1. 가. 회사개요</p>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p>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 | | | |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 www.koreab p .com | www.korea a p.com |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 | | |
|-----------------------|-------------|---|-------------------------------|
| | |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년 5월 3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정정 전 1) 참조 | 정정 후 1) 참조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제2부. 6. 나. 종류형 구조 | 정정 전 2) 참조 | 정정 후 2) 참조 | 연 갱신① |
| 제2부. 10. 나.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p> | |
|--|--|---|--|

| | | | |
|--------------------------------------|---|---|--|
| | | 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실에 대한 상계기간 연장) |

| | | | |
|--|--|--|--------------------|
| | | <u>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www.korea <u>bp</u> .com | www.korea <u>ap</u> .com | |
| 제5부. 1. 가. (2)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예탁결제원</u> 에 위탁하여야 하며, <u>예탁결제원</u> 은 수익자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한국예탁결제원</u> 에 위탁하여야 하며, <u>한국예탁결제원</u> | |

| | | | |
|--------------------------------------|---|---|----------|
| |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가입자격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p>제2부. 11. 가. (3)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p> | <p><u>(추가)</u></p> | <p><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p> | <p>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 |
|----------------------------------|------------------|-------------------------------|-------|
| | | 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p> |

| | | | |
|-----------------------------------|---|--|-------------------|
| 함), 일반법인 14% | | | 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추가)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

| 사항 | | | 영 및 연 갱신① |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가입자격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p>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 |
|----------------------------------|------------------|--|-------|
| | | <p>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p> |

| | | | |
|-----------------------------------|---|--|-------------------|
| 함), 일반법인 14% | | | 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이내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추가)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

| 사항 | | | 영 및 연 갱신① |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해지</u>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 | CLASS C-F 수익증권: | CLASS C-F 수익증권: | CLASS C-F 수익 |

| | | | |
|-----------------------|--|--|--------------------|
| <p>격</p> |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p>제2부. 11. 가. 매입</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 |
|---|---|---|---|
| |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 | | |
|--|--|--|--------------------|
| | | <u>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올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p>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u>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오피튜니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 | | |
|------------------------------|---|---|--------------------------------|
| <p>투자결정시 유의사항</p> | <p><u>(추가)</u></p> | <p>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p>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p> | <p><u>(추가)</u></p> | <p>2013년 5월 3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p> |
|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 <p>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 | | |
|----------------------------------|--|--|---------------------------------|
| <p>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p> | <p><u>(추가)</u></p>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p>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 격</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p>제2부. 11. 가. 매입</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p> | |
|--|--|---|--|

| | | | |
|--------------------------------------|---|--|--|
| | |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u>(추가)</u>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실에 대한 상계기간 연장) |

| | | | |
|--|--|--|--------------------|
| | | <p><u>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한빌딩) 4</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p>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u>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5)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글로벌 스트레티지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년 5월 3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다. 모자형 구조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p>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격</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삭제)</p> <p>6) (삭제)</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 | | | |
|----------------------------|--|---|----------------------------|
| <p>제2부. 11. 가. (3) (라)</p> | <p>1. <u>프랭클린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및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u>: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2. <u>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및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u>: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 <p>1. <u>프랭클린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및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u>: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2. <u>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u>: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 <p>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p> | |
|--|--|---|--|

| | | | |
|--|-------------------------------|--|--------------------|
| | | 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 집합투자업자의 |

| | CCMM 빌딩 3 층 |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도로명 주소 반영 |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에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환헤지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추가)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추가)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p> | |
|--|--|---|--|

| | | | |
|--------------------------------------|--|---|-----------|
| | | 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u></p> | |

| | | | |
|--|---|--|--------------------|
| | | <u>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p>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u>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 | | |
|------------------------------|---|--|--------------------------------|
| <p>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p> | <p><u>(추가)</u></p> | <p>2013년 5월 3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p> |
|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 <p>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 | | |
|---|---|---|--|
| <p>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 격</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p>제 2 부. 11. 가. (3) (라) 모투자 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 는 판매가격</p> | <p><u>(추가)</u></p> | <p><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p> | <p>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p> |

| | | |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 <p>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
| | 다. 모자형 구조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p>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격</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p>제2부. 11. 가. (3)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p> | <p><u>(추가)</u></p> | <p><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p> | <p>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p> |

| | | |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 <p>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u>(추가)</u></p>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실에 대한 상계기간 연장)</p> |

| | | | |
|--|--|--|--------------------|
| | | <u>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생략) • <u>(추가)</u> |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u>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u>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u> | <u>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u> <u>Class A : AH312</u> <u>Class A-e : AH318</u> <u>Class C-I : AH319</u> <u>Class C-F : AH320</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및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

| | | |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1부. 2. 마. 특수형태 및 문서 전반 | <u>(추가)</u> | <u>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및 집합투자규약, 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효력발생일부더 기존 가입자는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A 수익증권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모자형 <u>[다른 자투자신탁과의 비교]</u>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u>종류형</u> , 모자형 <u>(삭제)</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 | | |
|---------------------|--|--|---------------|
| | <u>(추가)</u> | 나. 종류형 구조 정정 후 1) 참조 | |
| | 다. 모자형 구조 | <u>*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 | <u>(2) 가입자격 : 가입자격은 없으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 <u>(2) 종류별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u> <u>*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p> | |
|--|--|---|--|

| | | | |
|----------------------------|--|---|---------------|
| | | 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 | <u>부과되는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u> | <p><u>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u></p> <p><u>[CLASS A, CLASS A-e 수익증권]</u></p> <p><u>1.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u></p> <p><u>2. 30 일 이상 : 없음</u></p> <p><u>[CLASS A,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u></p> <p><u>1.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u></p> <p><u>2. 90 일 이상 : 없음</u></p>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p> | 법 개정사항 반영 |

| | | 고 인정하는 사유 | |
|--------------------------------------|--|---|--|
| 제2부. 13. 1)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3. 2)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정정 전 2) 참조 | 정정 후 2) 참조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및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u>(추가)</u>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 |

| | | | |
|--|---|--|--------------------|
| | | <u>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올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p>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p> <p>• (추가)</p> | <p>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p> <p>•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p>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생략)</p> <p>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p> <p>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p>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p>(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p> | 법령 개정 반영 |

정정 후 1)

나. 종류형 구조

| 집합투자기구 종류 | 최초설정일 | 가입자격 |
|-----------|------------|--|
| A | 2007.06.05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 | | |
|-----|-----|--|
| A-e | 미설정 | 온라인을 통해,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 C-I | 미설정 |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 C-F | 미설정 |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주 1)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전 2)

| 구 분 |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 지급시기 |
|---------|-------------------|------|
| 선취판매수수료 | 1.00% 이내 | 매입시 |
| 환매수수료 | 30 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 환매시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2)

| 종류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A |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납입금액의 1.0% 이내 |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
| A-e |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납입금액의 | |

| | | | |
|-------------|--|---------|-------------------|
| | | 0.6% 이내 | |
| C-I |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없음 |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
| C-F |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 |
| 부과기준 | | 매입시 | 환매시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됩니다.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p>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p> | <p><u>(추가)</u></p>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 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 |
|--------------------------------------|---|---|---|
| | | 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 | | |
|--|---|--|--------------------|
| | | <u>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u>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 하는 사항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년 5월 3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해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 가입자격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p>5) <u>(삭제)</u> 6) <u>(삭제)</u></p> |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p> |

| | | | |
|-----------------------------------|---|--|-------------------|
| 함), 일반법인 14% | | | 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추가)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가입자격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p>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p>제2부. 11. 가. (3)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p> | <p><u>(추가)</u></p> | <p><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p> | <p>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p> | |
|--|--|--|--|

| | | | |
|----------------------------------|--|--|-----------|
| | |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p> |

| | | | |
|-----------------------------------|---|--|-------------------|
| 함), 일반법인 14% | | | 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추가)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 | <p>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영</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 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 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 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고 인정하는 사유 |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 | | |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 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 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정정 <u>전</u> 1) 참조 | 정정 <u>후</u> 1) 참조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제2부. 10. 나.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 | <p>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u>(추가)</u></p>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실에 대한 상계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p>제4부. 1. 가. 회사개요</p>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p>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 | | |
|----------------------------|---|--|--------------|
| 요약 재무내용 | | |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88(운니동, 삼한빌딩) 4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1. 가. (2)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예탁결제원</u> 에 위탁하여야 하며, <u>예탁결제원</u>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한국예탁결제원</u> 에 위탁하여야 하며, <u>한국예탁결제원</u>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추가)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 | <p>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영</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 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 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 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고 인정하는 사유 |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 | | |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 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 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추가)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

| | | | |
|---------------------|--|--|--------------------------------|
| | <p>다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다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변경</p>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해지</u> | <u>*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가입자격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 | | |
|--|---|---|----------------------------|
| |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p>제2부. 11. 가. (3)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p> | <p><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p> | <p><u>1. 국내투자 채권형 모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 <u>2.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p> | <p>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p> | |
|--|--|--|--|

| | | | |
|--|---|---|--|
| | |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 | | |
|----------------------------|---|--|--------------|
| 요약 재무내용 | | |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 락) | |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u>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u> | <u>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 <u>Class A : AH321</u> <u>Class A-e : AH327</u> <u>Class C-I : AH328</u> <u>Class C-F : AH329</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및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1부. 2. 마. 특수형태 및 문서전반 | <u>(추가)</u> | <u>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및 집합투자구역, 명칭 변경 | |

| | | | |
|-----------------------|--|--|-------------------|
| | |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효력발생일부더 기존 가입자는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A 수익증권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모자형 [다른 자투자신탁과의 비교]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종류형 , 모자형 (삭제)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 (추가) | 나. 종류형 구조 정정후 1) 참조 | |
| | 다. 모자형 구조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환헤지 내용 추가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추가)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p>제2부. 11. 가. (2)</p> | <p><u>(2) 가입자격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p> | <p><u>(2) 종류별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u>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p>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p> |
| <p>제2부. 11. 가. (3)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p> |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u>당일</u>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p> |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u>영업일의 다음영업일</u>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p> | <p>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p> | <p>없음</p> | <p><u>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u></p> | <p>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p> |

| | | | |
|----------------------------------|---|---|-----------------------|
| | | <p><u>[CLASS A 수익증권]</u> <u>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u></p> <p><u>[CLASS A-e 수익증권]</u> <u>1.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u> <u>2. 30 일 이상 : 없음</u></p> <p><u>[CLASS A,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u> <u>1.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u> <u>2. 90 일 이상 : 없음</u></p> <p>※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p> | |
| 제2부. 12.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추가) | <p><u>집합투자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집합투자증권 종류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u></p>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3. 1)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u>가입자 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3. 2)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u>정정 전 2) 참조</u> | <u>정정 후 2) 참조</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및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 |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 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u>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p>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하는 사항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p> | <p>법령 개정 반영</p> |
|-----------------------------------|--|--|-----------------|

정정 후 1)

나. 종류형 구조

| 집합투자기구 종류 | 최초설정일 | 가입자격 |
|-----------|------------|---|
| A | 2006.05.09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 A-e | 미설정 | 온라인을 통해,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 C-I | 미설정 |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 C-F | 미설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

| | | |
|--|--|---|
| | |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

주 1)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전 2)

| 구 분 |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 지급시기 |
|---------|----------------|------|
| 선취판매수수료 | 1.00% 이내 | 매입시 |
| 환매수수료 | 없음 | 환매시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2)

| 종류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A |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납입금액의 1.0% 이내 | 없음 |
| A-e | 판매회사 인터넷 banking: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납입금액의 0.6% 이내 |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
| C-I |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없음 |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
| C-F |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 |
| 부과기준 | | 매입시 | 환매시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됩니다.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해지</u> | <u>*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 | | |
|---|--|---|--------------------|
| | |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가. (3)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u>당일에</u>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u>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u>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않는 경우, 만약 잠재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p>제4부. 1. 가. 회사개요</p>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p>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p>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p>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p> | <p>한국채권평가</p> | <p>한국자산평가</p> | <p>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p> |
| | <p>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 (대표전화 02-399-3350)</p> | <p>서울시 종로구 울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층 (대표전화 02-399-3350)</p> | |
| | <p>www.koreabp.com</p> | <p>www.koreaap.com</p> | |
| <p>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p> | <p>(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p> | <p>(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p> | <p>법령 개정 반영</p> |

| | | | |
|---|---|---|-----------------|
| | <p>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p>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u>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5)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p>법령 개정 반영</p> |
| <p>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p>법령 개정 반영</p>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해지</u> | <u>*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가입자격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5) <u>(삭제)</u> 6) <u>(삭제)</u> | | |
| 제2부. 11. 가. (3)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u>당일에</u>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u>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u>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p>제4부. 1. 가. 회사개요</p>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p>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p>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p> | | | |
| <p>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p> | <p>한국채권평가</p> | <p>한국자산평가</p> | <p>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p> |
| | <p>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 (대표전화 02-399-3350)</p> | <p>서울시 종로구 울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층 (대표전화 02-399-3350)</p> | |
| | <p>www.koreabp.com</p> | <p>www.koreaap.com</p> | |
| <p>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p> | <p>(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p> | <p>(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p> | <p>법령 개정 반영</p> |

| | | | |
|--------------------------------------|---|---|----------|
| | <p>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u>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5)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 집합투자업자의 |

| | CCMM 빌딩 3 층 |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도로명 주소 반영 |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추가)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 (삭제)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6) <u>(삭제)</u> | |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가입자격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11. 가. (3)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u>당일에</u>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u>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u> 모투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 | | | |
|--------------------|-------------------------|---|------------------|
| | <p>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p> | <p>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합니다</p>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 | | |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4) (추가) 5) (추가) |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재형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추가)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 2 부. 11. 가. (3) (라) 모투자 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 | (추가)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 | | |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 <p>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프랭클린템플턴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p> | |
|--|--|--|--|

| | | | |
|--------------------------------------|--|--|-----------|
| | |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u> | |

| | | | |
|--|---|---|---------------------------|
| | | <p><u>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p>한국<u>채권</u>평가</p> | <p>한국<u>자산</u>평가</p> | <p>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p> |
| | <p>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p> | <p>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p> | |
| | <p>www.koreabp.com</p> | <p>www.koreaap.com</p> | |

| | | | |
|---|---|---|-----------------|
| <p>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p> | <p>(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p>법령 개정 반영</p> |
| <p>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p>법령 개정 반영</p> |
| <p>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p>법령 개정 반영</p> |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 |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 | 종류형 펀드로 구 |

| | | | |
|----------------------------|--|---|-----------------------------|
| | <u>신탁(A)(주식-재간접형)</u> | <u>신탁(주식-재간접형)</u> <u>Class A : AH330</u> <u>Class A-e : AH336</u> <u>Class C-I : AH337</u> <u>Class C-F : AH338</u> | 조 변경 및 집합 투자기구 명칭 변 경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1부. 2. 마. 특수형태 및 문서 전반 | <u>(추가)</u> | <u>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u> <u>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u> | 종류형 펀드로 구 조 변경 |
| 제1부. 2. 마. 특수형태 및 문서 전반 | <u>(추가)</u> | <u>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u> <u>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u> | 종류형 펀드로 구 조 변경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및 집합투자규약, 명칭 변경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 신탁(A)(주식-재간접형) →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 접형) | |

| | | | |
|-----------------------|---|--|-------------------|
| | | * 효력발생일부터 기존 가입자는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 Class A 수익증권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모자형 [다른 자투자신탁과의 비교]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종류형 , 모자형 (삭제)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 (추가) | 나. 종류형 구조 정정후 1) 참조 | |
| | 다. 모자형 구조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환헤지 내용 추가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추가)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 | (2) 가입자격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 | (2) 종류별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 | | |
|-----------------------|--------------------------|--|------------------|
| | <p><u>하고자 하는 투자자</u></p> | <p><u>은 아래와 같습니다.</u>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p> | |
| <p>제2부. 11. 가. 매입</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p> | <p><u>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u></p> <p><u>-30 일 미만: 이익금의 10%</u></p> <p><u>-30 일 이상: 없음</u></p> | <p><u>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 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u></p> <p><u>[CLASS A ,CLASS A-e 수익증권]</u></p> <p><u>1.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u></p> <p><u>2. 30 일 이상 : 없음</u></p> <p><u>[CLASS A,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u></p> | <p>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p> |

| | | | |
|----------------------------------|--|--|--------------------|
| | | <p>1.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 일 이상 : 없음</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2.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추가) | <p><u>집합투자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집합투자증권 종류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u></p>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3. 1)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u>가입자 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3. 2)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u>정정 전 2) 참조</u> | <u>정정 후 2) 참조</u> |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및 종류형 펀드로 구조 |

| | | | 변경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p> |

| | | | |
|-----------------------------------|--|--|-------------------|
| 함), 일반법인 14% | | | 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매회사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정정 후 1)

나. 종류형 구조

| 집합투자기구 종류 | 최초설정일 | 가입자격 |
|-----------|------------|---|
| A | 2007.08.29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 A-e | 미설정 | 온라인을 통해,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 C-I | 미설정 |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 C-F | 미설정 |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

| | | |
|--|--|-----------------|
| | |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

주1)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전 2)

| 구 분 |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 지급시기 |
|---------|----------------|------|
| 선취판매수수료 | 1.00% 이내 | 매입시 |
| 환매수수료 | 없음 | 환매시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2)

| 종류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A |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납입금액의 1.0% 이내 |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
| A-e | 판매회사 인터넷 banking: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납입금액의 0.6% 이내 | |
| C-I |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없음 |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
| C-F |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 |
| 부과기준 | | 매입시 | 환매시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됩니다.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헤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 |
|--|--|---|--|

| | | | |
|---|---|--|--|
| | |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p> |

| | | | |
|--|--------------------------------------|--|---------------------------|
| | <p>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p> |

| | | | |
|-------------------------------|---|--|--------------|
| | | |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

| | | | |
|---------------------|--|--|--------------------------------|
| | <p>다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다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변경</p>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해지</u> 내용 추가 | <u>*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가입자격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 | | |
|--|---|--|----------------------------|
| |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p>제2부. 11. 가. (3)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p> | <p><u>(추가)</u></p> | <p><u>1.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 :</u> <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합니다.</u> <u>2.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합니다.</u></p> | <p>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 |
|--|--|---|--|

| | | | |
|----------------------------------|--|--|-----------|
| | |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p> |

| | | | |
|-----------------------------------|---|--|-------------------|
| 함), 일반법인 14% | | | 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 | 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년 5월 3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정정 전 1) 참조 | 정정 후 1) 참조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제2부. 6. 나. 종류형 구조 | 정정 전 2) 참조 | 정정 후 2) 참조 |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정정 전 3) 참조 | 정정 후 3) 참조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 | <p>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p> |

| | | | |
|-----------------------------------|---|---|-------------------|
| 함), 일반법인 14% | | | 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1. 가. (2)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 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 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생략) • <u>(추가)</u> |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u>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u> |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 공시기준 개정 반 |

| | | | |
|-----------------------|---|--|-------------------------|
| | | <p>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p>9.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한정합니다.</p> | 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2) 가입자격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p>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p>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 |
|--------------------------------------|---|--|---|
| | | <p>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 | | |
|--|--|--|--------------------|
| | | <u>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생략) • <u>(추가)</u> |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2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u>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u> |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 공시기준 개정 반 |

| | | | |
|-----------------------|------------------|--|-------------------------|
| | | <p>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p>9.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한정합니다.</p> |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해지</u>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p> | |
|--|--|--|--|

| | | | |
|--------------------------------------|--|---|----------------------------|
| | | <p>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 |

| | | | |
|---|---|--|-----------------------------------|
| | <p>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 | | |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 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 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3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u>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u> |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의 청약 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 규정에 의한 적립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 | 금으로 한정합니다.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 |
|---|---|---|---|
| |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 | | |
|--|--|--|--------------------|
| | | <u>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p>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u>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u>로부터 5 일 이내에</u> (생략)</p>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4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 | | |
|-----------------------|-------------------------|---|--------------------|
| 문서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 |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한정합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환헤지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추가)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추가)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p> | |
|--|--|--|--|

| | | | |
|--------------------------------------|--|--|----------------------------|
| | | <p>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 |

| | | | |
|---|---|--|-----------------------------------|
| | <p>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 | | |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 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 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UH)(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u>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u> |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한정합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 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 |
|--|------------------------|---|-------------------|
| | | <p>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 |

| | | | |
|-----------------------------------|---|--|-------------------|
| 함), 일반법인 14% | | | 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 |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의 청약 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 | | |
|--------------------------|------------------|--|------------------------|
| | | 장법 제 2 조 제 12 호 규정에 의한 적립 금으로 한정합니다.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환헤지</u>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헤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 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 | ※ 환매연기사유 | ※ 환매연기사유 | 법 개정사항 반영 |

| | | | |
|---|---|--|---|
| <p>매연기</p> | <p>①~② 생략 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 | | |
|--|--|--|--------------------|
| | | <p><u>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한빌딩) 4</u>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p>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u>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5)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 집합투자업자의 |

| | | | |
|-----------------------|--------------------------------|--|--------------------|
| | <u>CCMM 빌딩</u> 3 층 |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u>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u> |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p>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p>9.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한정합니다.</p>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해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 <p>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 (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 | | |
|---|---|---|--|
| | <p>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실에 대한 상계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 | | |
|----------------------------------|--|--|----------------------|
|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 |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 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 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5) (추가) |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채권 5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 |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환헤지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 공시기준 개정 반 |

| | | 하시기 바랍니다. | 영 |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 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 |
|--|------------------------|---|--------------------|
| | |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 | | |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4) (추가) 5) (추가) |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아시안 그로스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 |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환헤지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p>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p> | <p><u>(추가)</u></p>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 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 |
|--------------------------------------|---|---|---|
| | | 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 | | |
|--|---|--|--------------------|
| | | <u>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 하는 사항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 |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 | <p>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p>9.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의 청약 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 2 조 제 12 호 규정에 의한 적립 금으로 한정합니다.</p>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 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p>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p> | |
|--|--|--|--|

| | | | |
|--------------------------------------|--|---|-----------|
| | |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u></p> | |

| | | | |
|--|--|--|--------------------|
| | | <u>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u>bp</u> .com | www.korea <u>ap</u>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p>하여야 합니다. (생략) • <u>(추가)</u></p> | <p>하여야 합니다. (생략) • <u>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u></p> | |
| <p>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p> | <p>(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u>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u> <u>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u></p> | <p>법령 개정 반영</p> |
| <p>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 <p>(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p> | <p>(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에 (생략)</p> | <p>법령 개정 반영</p>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u>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u> |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 | | |
|------------------------------|-------------------------|---|----------------------------|
| <p>투자결정시 유의사항</p> | <p><u>(추가)</u></p> | <p>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p>9.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의 청약 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 2 조 제 12 호 규정에 의한 적립 금으로 한정합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 영</p> |
|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p> |
| <p>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p> | <p><u>(추가)</u></p>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 영</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p> | |
|--|--|---|--|

| | | | |
|--------------------------------------|---|--|-----------|
| | |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u> | |

| | | | |
|--|--|---|--------------------|
| | | <p><u>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 | |

| | | |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파워리서치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u>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제 12 호</u> |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 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11. 가. | <u>(추가)</u> | ※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 |
|--|--|--|--|

| | | | |
|--------------------------------------|--|---|-----------|
| | | “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④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u>(추가)</u>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u> | |

| | | | |
|--|--|--|--------------------|
| | | <p><u>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u>채권</u> 평가 | 한국 <u>자산</u>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 | |

| | | |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 | | |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 |
| | <p>다. 모자형 구조</p> | <p>*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p> | |
| <p>제2부. 10. 나. 기타 투자위험</p> | <p><u>(추가)</u></p>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p>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격</p> | <p>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 | | |
|-------------|----------------|---|-----------|
| | 6) <u>(삭제)</u> | | |
| 제2부. 11. 가. | <u>(추가)</u>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p> | 미국인 투자 제한 |

| | | | |
|----------------------------------|--|---|-----------|
| | | <p>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 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I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p> <p>①~② 생략</p> <p>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 <u>(추가)</u> | <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u> |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 <p>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 <p><u>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실에 대한 상계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p> |
|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③</p> |
| <p>제4부. 1. 가. 회사개요</p> | <p>자본금 : <u>350억</u></p> | <p>자본금 : <u>385억</u></p> |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
| <p>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④</p> |

| | | | | |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이내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

프랭클린템플턴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p>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 <p>다. 모자형 구조</p> | <p><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p> | |
| <p>제2부. 10. 나. 기타 투자위험</p> | <p><u>(추가)</u></p>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p>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격</p> | <p>나. 종류형 구조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 | | |
|--------------------|---|--|------------------|
| | <p>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 | | |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추가) |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실에 대한 상계기간 연장)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 | <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

| | | | |
|-------------------------------|---|--|--------------|
| | | |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u>5 일전까지</u>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u>5 일 이내</u>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프런티어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도동 12 번지</u> <u>CCMM 빌딩</u>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여의공원로</u> <u>101(여의도동, CCMM 빌딩)</u>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u>예탁결제원</u> | <u>한국예탁결제원</u>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u>(추가)</u>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 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 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 | | |
|----------------------------|---|---|--------------------------------|
| | <p>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
| <p>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p> | <p><u>(추가)</u></p> | <p>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p>공시기준 개정 반영</p> |
| <p>제2부. 11. 가. (2)가입자격</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 | | |
|--------------------|--|--|------------------|
| | <p>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p> |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p>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 환매연기사유 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법 개정사항 반영</p> |

| 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②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연 갱신②</p>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 | | |
|--|---|--|--------------------|
| 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u>350억</u> | 자본금 : <u>385억</u>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u>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u>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u>율곡로 88(운니동, 삼한빌딩) 4층</u>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bp.com | www.koreaap.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보고서 |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이내 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

프랭클린템플턴 프런티어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문서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CCMM 빌딩) 3 층 | 집합투자업자의 도로명 주소 반영 |
| 문서전반 | 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추가)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추가) | 2013 년 5 월 3 일 - 모투자신탁 매입 청구일 변경 | 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

| | | | |
|-----------------------|---|---|-------------------------|
| | |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변경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공시기준 개정 반영 및 연 갱신① |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u>(삭제)</u></p> <p>6) <u>(삭제)</u></p> | <p>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
| 제2부. 9. 나. 위험관리 | <u>해지</u> 내용 추가 | <u>*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 <u>(추가)</u>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기준 개정 반영 |

| | | | |
|----------------------------|---|---|---------------------------------|
| <p>제2부. 11. 가. (2)가입자격</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u>(삭제)</u> 6) <u>(삭제)</u></p> | <p>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 <p>CLASS C-F 수익 증권 가입 자격 변경</p> |
| <p>제2부. 11. 가.</p> | <p><u>(추가)</u></p> | <p>※ 이 투자신탁은 1940 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 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 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p> | <p>미국인 투자 제한</p> |

| | | | |
|-------------------------|----------|--|-----------|
| | | <p>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에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p> <p>“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환 | ※ 환매연기사유 | ※ 환매연기사유 | 법 개정사항 반영 |

| | | | |
|---|---|--|--------------|
| <p>매연기</p> | <p>①~② 생략 ③ ④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p>①~② 생략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 |
| <p>제2부. 13. 나. 보수 및 비용 (및 투자설명서 전반)</p>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연 갱신②</p> |

| | | | |
|---|---|---|---|
|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추가)</u></p> | <p>(생략)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생략)</p> <p><u>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
| <p>제2부. 14. 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4 천만원</u></p> | <p><u>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 : 2 천만원</u></p> |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p> |

| | | | |
|-----------------------------------|---|--|-------------------|
| 함), 일반법인 14% | | | 영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③ |
| 제4부. 1. 가. 회사개요 | 자본금 : 350억 | 자본금 : 385억 |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 |
|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 갱신④ |
|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 | | |
|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 한국 채권 평가 | 한국 자산 평가 | 채권평가회사 변경 반영 |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02-399-335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 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 |
| | www.korea bp .com | www.korea ap .com | |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추가) | (생략)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생략)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법령 개정 반영 |
| 제5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생략) | (생략)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 법령 개정 반영 |

| | | | |
|---|----------------------------------|--|----------|
| | 1)~3) (생략) 4) (추가) 5) (추가) | (생략) 1)~3) (생략) 4) 법 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생략) | (생략)주주총회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생략) | 법령 개정 반영 |